

의안번호	2209616
의 퇴 인	여기구의원
회 답 일	2024. 6. 19.
추 계 번호	24B09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3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 3. “ <u>공공비축양곡</u> ”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 밀 및 콩</u> 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u>양곡수급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4.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 <u>기준가격</u> :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15조의2 신설(양곡가격안정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u>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u> (이하 “ <u>양곡가격안정제도</u>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u>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u> (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6조제4항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항) 1. <u>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u> :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u>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u> . 이 경우 <u>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u> . 2. <u>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u> : <u>정부관리양곡의 판매</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6조의3 신설(양곡수급관리위원회)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의4 신설(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u>벼 이외의 작물</u>(이하 “<u>타작물</u>”이라 함)의 <u>재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u></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2항)</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u>	의무·재량 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제3호(정의)	• 미대상: 법 시행령에서 공공비축양곡으로 정하고 있는 밀 및 콩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일정 규모의 미곡, 밀, 콩을 매입중 ※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 미대상 –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용역비용이 일부 소요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량·재배면적·소비량과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2]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참고(농림축산식품 고시) – (기준가격) 농림축산식품부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안 제15조의2 신설(양곡가격안정제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6조제4항(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5	안 제16조의3 신설(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미대상: 법 제16조제5항¹⁾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²⁾에 따라 운영중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생산자·유통·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중(2020.9.2, 출범) – 농식품부(차관(위원장), 식량정책관), 기재부(민생경제정책관), 농업인단체(5명), RPC단체(3명), 소비자단체(2명), 전문가(2명), 유관기관(농협경제지주, 농경연)
	안 제16조의4 신설(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양곡가격안정제도(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양곡가

1) 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준가격)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안 제2조제3호의2)
- 개정안에 따른 차액 지급금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품목별 양곡 생산량 및 시장가격, 품목별 양곡 시장가격의 기준가격 미달 여부, 차액(=기준가격-시장가격)의 지급비율(전부 또는 일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품목별 양곡 가격 차액보전})_{i,t} \\
 &= \sum_{i,t} (\text{양곡 기준가격} - \text{양곡 시장가격})_{i,t} \times \text{지급비율}_{i,t} \times \text{대상 물량}_{i,t}
 \end{aligned}$$

- 이때, (양곡 기준가격 - 양곡 시장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지원대상 양곡 품목(예: 쌀, 밀, 콩 등)

□ 그런데 지원대상 양곡 품목 및 물량, 품목별 양곡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지급비율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고,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³⁾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변동직접지불제를 운영한 바 있음([참고자료 3] 변동직접지불제 참고)

나.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안 제16조제4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에 따른 수급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3) 안 제15조(양곡의 가격 보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미곡에 대해 당해연도 미곡의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을 매입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특히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
 -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매년 9~1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로 발표중⁴⁾
 - 포대벼(건조벼):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⁵⁾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포장재 및 포장임)을 제외한 비용

[표 1] 개정안에 따른 미곡 가격 위기상황 시의 대책

조항	위기상황	대책
안 제16조제4항제1호	미곡 가격이 <u>기준 이상으로 폭락</u> 하거나 <u>폭락이 우려</u> 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 이때,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매입
안 제16조제4항제2호	미곡 가격이 <u>기준 이상으로 폭등</u> 하거나 <u>폭등이 우려</u> 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그런데 쌀 생산량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해당연도의 위기상황 시 대책 마련을 위한 미곡 물량 및 가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쌀 초과생산량,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등은 [참고자료 4] 쌀 생산량

4) 예를 들어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금은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6호, 2023.10.25.)를 따름. 참고로 2023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및 산물벼의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포대벼

$$\text{매입가격 (포대벼 40kg)} = [\text{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text{가공임(8,002원)}] \times \frac{40\text{kg}}{80\text{kg}} \times \frac{72\%}{(\text{도정수율})}$$

• 산물벼

$$\text{산물벼(40kg) 매입가격} = \text{포대벼(40kg) 매입가격} - \text{포장비용} * (798\text{원}/40\text{kg})$$

* 포장비용 798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58원)

5)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 [참고자료 5]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참고

다.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안 제16조의4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와 연계하여 타작물(벼 이외의 작물) 재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타작물 재배 농업인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타작물은 벼 이외의 작물로 조사료(粗飼料)⁶⁾, 일반·꽃거름, 두류, 휴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타작물 품목군별 재배면적 및 타작물 재배 지원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타작물 재배면적}_{i,t} \times \text{지원단가}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i 는 타작물 품목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타작물 재배면적, 품목별 면적당 지원단가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0년 한시적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⁷⁾을 실시한 바 있음([참고자료 6] 논타작물 재배 지원제도: 2018~2020년 참고)

6) 조사료: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자료: 농촌진흥청, 농사로포털, 「농업용어사전」)

7)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기존 쌀 농가가 쌀을 대체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단위면적 당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2018~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한시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2019				2020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이·전용 (B)	집행액 (C)	집행률 [C/(A+B)]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 (B/A)
136,829	67,880	49.6	150,479	△59,700	83,682	92.2	54,992	54,989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2019~2023년) 및 계획(2024년)>

(단위: 톤, 원/kg, 백만원)

공공비축양곡		미곡 ¹⁾		밀 ²⁾	콩 ³⁾
		포대벼	산물벼		
2019	매입량(톤)	269,767	80,231	10,201	16,767
	매입단가(원/kg)	2,848		975	4,500
	매입금액(백만원)	996,946		9,924	73,993
2020	매입량	249,328	81,744	853	557
	매입단가	2,644		975	4,500
	매입금액	875,333		859	2,821
2021	매입량	257,078	92,899	8,401	2,248
	매입단가	2,609		975	4,700
	매입금액	913,080		8,600	11,722
2022	매입량	321,980	128,020	16,561	18,697
	매입단가	2,261		975	4,700
	매입금액	1,017,375		18,955	87,458
2023	매입계획량	289,058		110,706	18,892
	매입단가	2,480		975	4,800
	매입예산	991,575		20,343	154,429
2024 (p)	매입계획량	450,000		25,000	25,000(p)
	매입예산단가	2,756(p)		975(p)	4,800
	매입예산	1,226,598		30,784	128,343

주: 2019~2022년 결산 기준/ 2023년 매입실적 작성/ 2024년 예산 기준

1) 미곡: 미곡매입가격은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2) 밀: (매입량·매입금액) 2019~2023년 해당연도 국산 밀 매입 및 정산 결과 기준(aT), 2024년 예산 기준 / (매입단가) 2019~2023년 국산 밀 양호 기준, 2024년 국산 밀 제면용 1등 기준

3) 콩: 연산 기준으로 작성, 매입금액은 물품대 기준, 매입단가는 대립종 특등 기준 수매단가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⁸⁾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단위: %)

품 목	'27년 목표치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7.0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쌀	98.0
보 리	34.6 / 33.1
밀	8.0 / 5.0
콩	43.5 / 11.6
옥수수	8.2 / 1.7
서 류	109.5 / 102.5
축산물(육류)	66.5
－ 쇠고기	37.1
－ 돼지고기	72.6
－ 닭고기	82.4
우유 및 유제품	47.7
계 란	98.6
사 료	38.2
－ 배합사료	24.2
－ 조사료	84.6
채소류	89.6
과실류	75.3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밀·콩·옥수수·서류 등은 식량자급률 / 곡물자급률 순

8) [시행 2023. 4.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32호, 2023. 4. 24., 제정]

[참고자료 3] 변동직접지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유사 제도

- 개정안의 「적정가격보장제」와 유사한 제도로 '05~'19년까지 운영된 「변동직접지불제」가 있음
 - * 舊 농업소득보전법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 제2조(정의)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변동직접지불금 개요

- (대상농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 농업인: 0.1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상한: 30ha)
 -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4,500만원 이상(상한: 50ha, 들녘: 400)
- (지급 단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차액 지급
 - * (목표가격) '05~'12년산: 170,083원/80kg, '13~'17년산: 188,000원, '18~'22년산: 214,000원
 - ** (고정직불 단가) 100만원/ha, 1ha당 쌀 생산량인 67가마(80kg)를 기준으로 환산시 14,925원/80kg(17년산까지 63가마 기준)
 - *** (변동직불금 단가) (목표가격 - 80kg당 수확기 쌀값) × 85/100 - 80kg당 고정직불금
- (목표가격)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 산정방식 (舊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9조)>

$$\text{변경 목표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함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실적 등

연산별*	농가수(천호)	예산액(억원)	지급총액(억원)
'19년산	641	2,384	2,336
'18년산	650	2,533	1,114
'17년산	675	10,800	5,393
'16년산	685	14,900	14,898
'15년산	685	7,193	7,262
'14년산	671	1,641	1,941
'13년산	697	200	—
'12년산	719	252	—
'11년산	740	620	—
'10년산	781	7,993	7,501
'09년산	815	5,951	5,945
'08년산	1,025	676	—
'07년산	1,016	5,330	2,791
'06년산	1,000	9,501	4,370
'05년산	984	9,096	9,007

*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10월~익년 1월까지 쌀값이 나와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익년 지급(예: '16년산 → '17년 초 지급)

[참고자료 4]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쌀 생산량 현황

(단위: 천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생산량(A)	4,197	3,972	3,868	3,744	3,507	3,882	3,764	3,702
수요량(B)	3,898	3,822	3,806	3,756	3,604	3,614	3,609	3,607
초과생산량 (A-B)	299	150	62	△12	△97	268	155	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 현황

(단위: 20kg, 정곡 기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지 쌀값	단순 평균	38,303	48,392	47,491	54,121	53,535	46,817	51,810
	비추정 평균	37,328	48,215	47,084	53,456	52,198	45,455	50,699

주: 전국평균 수확기 산지쌀값은 10~12월 산지 쌀값을 평균하여 계산(통계청 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5]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최근 7년간(2018~2024.5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시장격리곡(미곡) 매입현황

(단위 : 정곡/천톤, 억원)

연산	매입시기		평균가격 (조곡 ¹⁾ , 원/40kg)	매입물량 (정곡 ¹ , 천톤)	매입금액 (억원)	매입방법
2021	1차	'22.2.14.~4.8.	63,763(평균낙찰가)	143.5	3,176	입찰
	2차	'22.5.19.~7.20.	60,643(평균낙찰가)	125.3	2,617	입찰
	3차	'22.7.20.~9.8.	57,793(평균낙찰가)	100.7	2,027	입찰
	4차	'22.10.20.~12.31.	54,972(평균낙찰가)	78.6	1,502	입찰
	소계			448.1	9,322	
2022	'22.10.19.~'23.3.31.		64,530(1등급기준)	324	7,322	공공비추과병행

주: 1)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2) 2022년산 매입금액은 잠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연산별 시장격리 물량 및 정산현황 등

(2024. 5. 31. 기준, 단위: 억원, 정곡)

구분	상환후 잔액 (A-B)	매입 물량 (천톤)	남은 물량 (천톤)	매입 자금 (A)	누적 상환액 (B)	상환 시기
<합 계>	28,561	2,925	772	53,759	25,200	-
■ 판매 완료('05산~'17산)	12,485	2,153	-	37,115	24,632	-
■ '05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144	-	2,433	2,433	'06~'16
■ '08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100	-	1,714	1,714	'14~'23
■ '09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566	-	9,299	9,299	'15~'24
■ '10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86	-	1,411	1,411	'11 (공매후정산)
■ '14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1,918	240	-	4,715	2,798	'19~'28
■ '15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3,136	357	-	6,272	3,136	'20~'29
■ '16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2,752	299	-	4,587	1,836	'21~'30
■ '17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4,679	361	-	6,684	2,005	'22~'31
■ '21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경제지주)	8,754	448	448	9,322	568	'27~'36
■ '22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7,322	324	324	7,322	-	'27~'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6] 논타작물 재배 지원제도: 2018~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존 쌀 농가가 쌀을 대체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단위면적 당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쌀 대비 소득차, 영농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평균단가(270~340만원/ha) 내에서 벼 농사 대비 소득차, 영농 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단가 설정
 - * ①쌀과의 소득차를 보전, ②쌀의 작업 편리성을 대체할 수준의 보전(노동시간 반영), ③작물 전환에 따른 수량 감소 반영, ④기타 전환에 어려운 요소 반영(배수시설 등)

<품목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조사료	일반·꽃거름	두류	휴경
2018년	400	340	280	—
2019년	430	340	325	280
2020년	430	270	255	210

□ 예·결산 등 실적

(단위: 억원, 천ha)

연도	예산액	집행액	사업실적
2018	1,368	679	26.5
2019	1,505	837	28.6
2020	550	550	21.5